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19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23가단309330 근저당권말소
원 고	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피 고	1. B
	2. ○○광역시
	소송대리인 C, D, E, F, G, H
변 론 종 결	2023. 6. 23.
판 결 선 고	2023. 7. 14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. 7. 30. 접수 제534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○○○○시는 위 가.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19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1)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은 원래 I의 소유이었는데, 원고가 2015. 8. 10.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2) I은 2015. 7. 30. J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,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를 하여 주었다.

3)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파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.

나. 의제자백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2. 원고의 피고 ○○○○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, I이 피고 B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, 피고가 2015. 9. 10. 피고 B이 체납한 지방세 23,112,710원을 청구채권으로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19

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5. 10. 21. 그 압류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○○○○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로 되고, 피고 ○○○○시는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○○○○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0-19

별지(부동산의 표시)

(1동 건물의 표시)

○○○○시 ○○○구 [], []

[] []동

[도로명주소]○○○○시 ○○○구 []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

1층 641.39㎡ 2층 641.39㎡ 3층 641.39㎡ 4층 641.39㎡ 5층 628.88㎡

지하 145.75㎡

부속

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

공중변소 9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○○○○시 ○○○구 [] 대 290.3㎡

2. ○○○○시 ○○○구 [] 대 8368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[] 철근콘크리트조 118.83㎡

(대지권의 표시)

1. 소유권대지권 290300분의 1000

2. 소유권대지권 8368000분의 93953

-- 끝 --